

보상계획 열람 · 공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-283호(2021.06.24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『서강대로(창전동15-30번지) 도로확장』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5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서강대로(창전동15-30번지) 도로확장
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명 : 서울특별시청

2)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다. 위 치 : 마포구 창전동 15-30번지

라. 규 모 : 도로확장 10㎡

사. 사 업 기 간 : 착수로부터 2021. 12. 31.까지

2. 보상대상

가.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조서

연 번	소 재 지 (위 치)	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동	번지					성명	주 소(등기)	성명	주 소	소유권 이외의 권 리	
1	창전	15-30	대	10	10	대	문**	경기도 부천시 상오로 160번 길 **	창전동 새마을금고	서울 마포구 창전동 85-1	근저당권	

나. 편입 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 등 일체를 포함하며,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미조사된 물건 등은 추후 보완하여 보상합니다.

3. 열람 및 이의 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21. 7. 15. ~ 2021. 7. 29.

나. 열람장소 :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(☎02-3153-9714)

다. 이의신청 : 열람공고 기간 중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

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.

나.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소유주가 요청한 계좌로 이체합니다.

5. 감정평가업자 추천

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나. 토지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사항

가. 편입 토지(물건)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, 주소(거소)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
나. 보상(계획)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설관리과(☎02-3153-97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